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조명래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경우에 산정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법적 다툼이 지속되고 있어, 납부 금액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지하 설치비용 납부 근거를 마련하여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등 본 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택지개발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지하 설치비용 납부 근거 마련(안 제4조 제3항)

- 주거지역이 인접하여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비용을 설치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부담금 산정기준 구체화(안 별표5)

- 택지개발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주민 편의시설,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납부하도록 구체적 근거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민원 발생이 우려되어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설치비용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 및 별표 5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4조제5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5]

납부금액 산정기준

(제4조제3항 관련)

1. 시설 설치비

시설 설치비 = 가 + 나 + 다

가. 소각시설

$$\text{산식} = \frac{B}{C} \times D \times E \times F \times G \times H$$

B : 생활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른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포함한다) 종량방식 혼합배출량

C :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D : 택지등의 계획인구

E : 변동계수(1.3미만)

F : 가동율(1.2)

G :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

H : 지상시설은 1, 지하시설은 1.4

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text{산식} = \frac{B}{C} \times D \times E \times F \times G \times H$$

B : 음식물류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른 사업장생활계 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분리배출량

C :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D : 택지등의 계획인구

E : 변동계수(1.3미만)

F : 가동율(1.2)

G : 폐기물 처리시설 종류(사료화, 퇴비화, 바이오가스화시설 등)별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

H : 지상시설은 1, 지하시설은 1.4

다. 주민편익시설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비고

1. “가동율”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보수기간을 감안하여 연간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일수 300일을 기준으로 한 값을 말한다.
2.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납부금액 통보시점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시설용량에 해당하는 톤당 설치단가”, “지상시설은 1, 지하시설은 1.4”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톤당 실시설계 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3. 나목 “폐기물 처리시설 종류(사료화, 퇴비화, 바이오가스화시설 등)”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종류를 고려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부지 매입비

$$\text{시설 부지 매입비} = \text{가} \times \text{나}$$

가. 시설부지 소요면적

시설부지 면적은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하여 각각 산출하여 합산한다.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소요면적 (㎡)	항목	
	1) 시설부지 면적 [={가)+나)+다)+라)} × 100 ÷ 건폐율(%)]	가) 폐기물처리시설 면적 [시설용량(톤/일) × 소요면적(㎡/톤/일)]
		나) 주민편익시설 면적
		다) 관리동 면적
		라) 세차동 등 기타시설 면적
	2) 부대시설 면적(법 제23조 관련)	

나. 부지매입 단가

- 1) 당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당 조성원가
- 2) 납부금액 산정 당시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가 당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외로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부지의 단가를 적용

$$\square \text{ 납부금액} = \text{시설 설치비} + \text{시설 부지 매입비}$$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② (생략) ③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납부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u><후단 신설></u> 1. 시설부지의 매입에 드는 비용의 산정: 제2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매입에 드는 비용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산정 가. 소각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u>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민원 발생이 우려되어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u> <u><삭 제></u> <u><삭 제></u>

<u>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u> <u>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u> <u>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u> <u>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u> <u>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u> <u>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u> <u>나.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u> <u>의 경우: 1일 처리능력 30</u> <u>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u> <u>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u> <u>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u> <u>택지등에서의 1일 발생 예</u> <u>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u> <u>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u> <u>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u> <u>금액</u>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연 락 처	(044) 201 - 7406